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위원회 개최 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경우와 의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간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, 심의·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분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간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, 심의·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, 심의·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
<u>④ ~ ⑨</u> (생략)	<u>⑤ ~ ⑩</u> (현행 제4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)
제9조(분과위원회의 운영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9조(분과위원회의 운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분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 간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, 심의·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
<u>⑤ ~ ⑫</u> (생략)	<u>⑥ ~ ⑬</u> (현행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와 같음)